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공동논평] 국정원 통제 및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날 짜 2016. 4. 15. (총 4 쪽)

## 논 평

###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1.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3.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  
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5.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 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  
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  
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 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  
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  
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6.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  
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  
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7.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  
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  
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  
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  
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  
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8.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끝.